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5. .
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그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하여 특정 분야 또는 현안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로만 한정하여 위촉·활용코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전문가의 위촉 및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

- 개정안

-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·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2항)
-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.(안 제4조제4항)

- 수정안

-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2항)
-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.(안 제4조제4항)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감사·조사”를 “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사 또는 조사업무”를 “조사업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 <신 설>	제4조(사무보조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	제4조(사무보조자) ①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<u>감사·조사</u>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 <u>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인의 위촉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④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<u>감사 또는 조사업무</u> 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조사업무</u> ----- ----- -----.